

기초연구 40년 기념식 기획 및 운영 용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091)
- 2) 입찰건명 : 기초연구 40년 기념식 기획 및 운영 용역
-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5) 사업금액 : 12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1.
- 7) 공동계약 : 불허
- 8) 입찰일정 :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26.07.15(수) 15시		온라인(ZOOM)*	
입찰보증서	'26.07.14(화) 09시	'26.07.23(목)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	'26.07.14(화) 09시	'26.07.24(금) 10시		
제안서	'26.07.14(화) 09시	'26.07.24(금)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26.08.04(화) 13시 (예정)		과학 창의재단	개별 고지, 일정 변동가능

* us02web.zoom.us/j/83272473469 (ID 832 7247 3469 PW 759296)

2. 입찰참가 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발주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같습니다.
-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 4) **기타서류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증빙자료 포함)
※ 반드시 별도파일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발표자료로 활용예정
- 5)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공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 1)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3)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7)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 8)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이 사업은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후정산을 시행합니다.

15. 안내 및 문의사항

- 1) 사업내용 : 02-559-3971 (과학문화콘텐츠실)
-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총무실)
- 3) 제안서 평가 : 02-559-8057 (안전·총무실)
- 4) 안전보건계획서 등 안전 : 02-559-3876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sijung.yim@gmail.com 노무사 : sr22069961@gmail.com

2026년 7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사후원가 정산 기준 및 절차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하기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최종금 지급 순으로 진행한다.

[적용범위]

1. 본 입찰건의 다음 비목에 한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 사후원가검토 비목 : 인쇄물, 식음료, 기념품 등
* 참가자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감하는 항목 (과업 협상에서 확정)

[사후원가검토 세부 기준]

1.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법인·개인기업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재단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2.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감한 공급가액으로 산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된다.

※ 산출내역에 대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 재단과 협의한 최종 산출내역서(견적서)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최종산출내역서 외의 집행금액은 재단과의 별도 확인된 사전협의를 없는 경우 집행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각 요율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최초 용역수행사가 제시한 기준율을 적용하며,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원가검토 절차]

1.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제3자에게 위탁한 부분 포함)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원가검토

-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재단'이 요구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최종금 지급

- 1) 최종금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여 지급한다.

- 2)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사후원가검토결과에 따라 지급한다.